

대한호신협회 자격검정 규정



대 한 호 신 협 회

[대한호신협회] 호신술지도자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26. 1.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호신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호신술지도자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자격의 명칭은 호신술지도자라 한다.

제3조 (검정조직 및 인력의 보유 현황)

본회는 자격 검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다.

- ① 관리·운영조직 : 자격 검정의 기획, 운영, 발급을 총괄하는 '자격검정관리위원회'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둔다.
- ② 검정 인력 : 호신술 및 무도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자격 검정 출제 및 평가 위원 3명 이상을 상시 보유한다.

제2장 자격검정관리위원회

제4조 (설치)

자격 검정의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회 산하에 자격검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본 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은 호신술 및 무도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검정의 시행 계획, 출제 및 채점 기준 설정, 자격의 심사 및 결정, 부정행위자 처분 등 검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장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및 직무내용

제7조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 ① 이 규정은 대한호신협회에서 시행하는 호신술 지도자 자격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호신술 지도자 자격의 등급은 MASTER(KSDA - M), 1급(KSDA - I), 2급(KSDA - II)으로 한다.

제8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 ① 동 자격은 “호신술지도자는 각종 범죄 및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한다. 주요 직무는 관련 법률 및 인성 교육 지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의 철학에 기반한 상황별 대처 능력 배양, 생존기술 및 도구 활용 호신법의 체계적 교육과 보급, 그리고 안전한 호신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관리이다”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호신술 지도자	MASTER (KSDA - M)	호신술 분야의 최고위 지도자로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지도자 관리 및 교육 시스템을 총괄하며, 고난도 호신 기술과 교수법을 전수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급 (KSDA - I)	호신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추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존기술과 호신방법을 전문적으로 지도한다. 각종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심화 기술을 교육하며, 체계적인 호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급 (KSDA - II)	호신의 기초 이론과 실기를 숙지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존기술과 호신방법을 지도한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 교육과 인성 지도를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호신 문화를 보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검정기준)

① 대한호신협회는 호신술 지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호신술 지도자	MASTER (KSDA - M)	호신술 최고위 지도자로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고난도 호신술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 여부
	1급 (KSDA - I)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 대처법 및 호신 생존기술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고급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 여부
	2급 (KSDA - II)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호신 생존 기술과 안전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기초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 여부

제10조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
MASTER (KSDA - M)	만 25세 이상 인 자로서 1급 취득 후 실무 2년(30시간) 이상이거나, 경찰·경호 전문학사로서 관련 분야 5년 경력 및 본회 MASTER 연수를 수료한 자. 경력 증명은 경력증명서, 4대 보험 득실확인서,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활동 확인서로 한다.
1급 (KSDA - I)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2급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15시간 이상) 인 자 및 본 회가 인정하는 무도 공인 4단 이상 소지자로서 본 회의 전문가 연수 과정을 수료한 자. 경력 증명은 경력증명서, 4대 보험 득실확인서,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활동 확인서로 한다.
2급 (KSDA - II)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본 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4장 검정 과목 및 방법

제11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검정과목 및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MASTER (KSDA - M)	필기시험 (이론)	1. 강사 양성 2. 관리 시스템 3. 스포츠 안전관리
	실기시험 (실기)	1. 프로그램 기획. 설계 2. 강의 계획서 작성
1급 (KSDA - I)	필기시험 (이론)	1. 호신 관련 법규 2. 지도자 교수법 3. 스포츠 안전관리
	실기시험 (실기)	체포, 연행 및 관절 제압 등 고급 술기
2급 (KSDA - II)	필기시험 (이론)	1. 호신 개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김종현, 이영석 저) 2. 스포츠 안전관리
	실기시험 (실기)	1. 생존기술 12가지 2. 내 손안의 호신방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김종현, 이영석 저)

제12조 (교재 및 평가방법)

- ① 이론 평가는 공식 수험서인 김종현·이영석 공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기준으로 출제한다.
- ② 실기 평가는 정확성(40점), 신속성(30점), 숙련도 및 태도(30점)를 배점으로 하여 평가위원 2인 이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제13조 (합격 결정)

- ①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 ② 실기시험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1. MASTER (KSDA - M) : 70점 이상
2. 1급 (KSDA - I) 및 2급 (KSDA - II) : 60점 이상

제13조의 2 (이의신청)

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검정의 시행

제14조 (검정 공고)

본회는 검정 시행 2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시, 장소, 과목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의 2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

검정 당일 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수험표와 규정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제15조 (시험 감독)

위원장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감독관을 지정하여 시험장 질서 유지 및 부정행위 단속을 수행하게 한다.

제16조 (부분 합격 및 재시험)

필기 또는 실기 중 어느 한 분야만 합격한 경우, 해당 합격일로부터 1년간 기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6장 교육 연수

제17조 (교육 이수)

- ① 응시자는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12시간(교육 10시간, 평가 및 수료 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의 이론 및 규정된 실기 기술로 구성한다.

제18조 (수료)

총 교육 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교육 평가를 통과한 자에게 수료를 인정한다.

제7장 자격증 교부 및 관리

제19조 (등록 및 발급)

최종 합격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자격 등록을 마쳐야 하며, 본회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등록대장에 기재한다.

제20조 (관련 서류의 보존)

자격 검정 관련 서류(시험지, 채점표, 사정 기록 등)는 자격의 공신력 입증을 위하여 3년간 보존한다.

제8장 보수교육

제21조 (자격 유지 및 보수교육)

① (자격 유지)

본 자격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영구히 유지된다.

② (강사 활동 자격)

단, 대외적인 강사 활동 및 지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연 1회 보수교육(4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활동 제한)

해당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 시 강사 활동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교육 이수 즉시 그 자격이 회복된다.

제9장 소비자 보호 및 환불

제22조 (검정료의 환불)

본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정료를 환불한다.

① 과오납한 경우 : 전액 환불

- ② 본 회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 ③ 접수 기간 내 취소 : 전액 환불
- ④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검정 시행 4일 전까지 취소 : 50% 환불
- ⑤ 검정 시행 3일 전부터 당일 : 환불 불가

제10장 자격 취소 및 윤리

제23조 (자격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① 범죄 행위

직무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연루된 경우

② 명예 실추

협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또는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도덕적 결격 사유

지도자로서 품위를 저해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④ 부정 취득 및 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한 경우

⑤ 운영 방해

협회의 정당한 지시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협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23조의 2 (징계 절차)

- ①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장은 해당 인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② 징계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③ 자격이 박탈된 자는 발급된 자격증을 즉시 반납해야 하며, 박탈일로부터 5년간 재응시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자격 부여의 특례)

본 자격의 공식 수험서 저자 및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자격검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MASTER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